(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나믹변액종신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종신	10년납	만 15세 ~ 60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20년납	만 15세 ~ 50세
	55세납	만 15세 ~ 45세
	60세납	만 15세 ~ 50세
	65세납	만 15세 ~ 55세
	70세납	만 15세 ~ 60세

3.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험금

(1)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에 이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기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1)' 에서 정한 기본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큰 금액을 이 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사망보험금을 말한다.

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한다)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해지계약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한다)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다. '나'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을,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8.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 적립한다.

다.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이 경우 상환된 금액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3)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4)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 등에 따라 계산하여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평가한다.

(5)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① 채권형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② 혼합형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 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2)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3) '(1)'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4)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 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각각 3개월 이내,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운영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9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0712329%)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66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8109589%)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를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1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3) ‘(2)’에서 정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회사는 운영보수에서 그 초과분을 충당한다.

(4)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 및 ‘(2)’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정한 펀드 중 1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보험연도 기준 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변경 및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펀드 설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펀드 설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나'의 '(3)'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변경 또는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1)'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요구일 + 제5영업일」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다만, 최저 펀드 이전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4) 회사는 '(1)'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2)'의 현금이전시 공제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5)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 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비용, 보수, 회계감사비용 및 채권평가비용 등을 펀드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① 투자운용인력 변경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한 경우

③ '①' 및 '②'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0.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12. 기타사항'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3)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4)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공제액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 에 의한 자금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1.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영업보험료를 할인한다.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1억원 미만 (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영업보험료의 3.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영업보험료의 4.0%
3억원 이상	영업보험료의 5.0%

12. 기타 사항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회 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월계약해당일」과「납입일 + 제3영업일」중 늦은 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월계약해당일」인 경우에는 “이체금액”은 납입일로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납입일 + 제3영업일」인 경우에는 “이체금액”은 납입일로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3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라.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특별계정 총 좌수

(2) 특별계정 기준가격

(3) 특별계정 자산총액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7) 특별계정 운용보수

(8)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사.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